

*본 자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위한것입니다.



2024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확정급여형(DB)

CONTENTS

01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	01
0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특징	02
03	사용자의 적립금	03
04	임금 및 퇴직급여	04
05	퇴직급여 지급 및 개인형IRP로의 이전절차	05
06	중도인출 / 담보대출	07
07	연금소득세 및 퇴직소득세 과세 체계	08
08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시 처리	11
09	폐업·도산기업의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 신청 방법	12
10	자산·부채관리 및 노후설계	13
11	기타	15



퇴직연금관련사이트안내

신한투자증권
<http://www.shinhanse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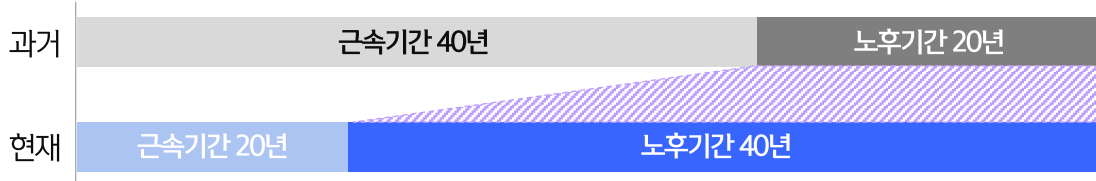
퇴직연금상담센터

신한투자증권 퇴직연금 전용상담
 ☎ 1588-1122

01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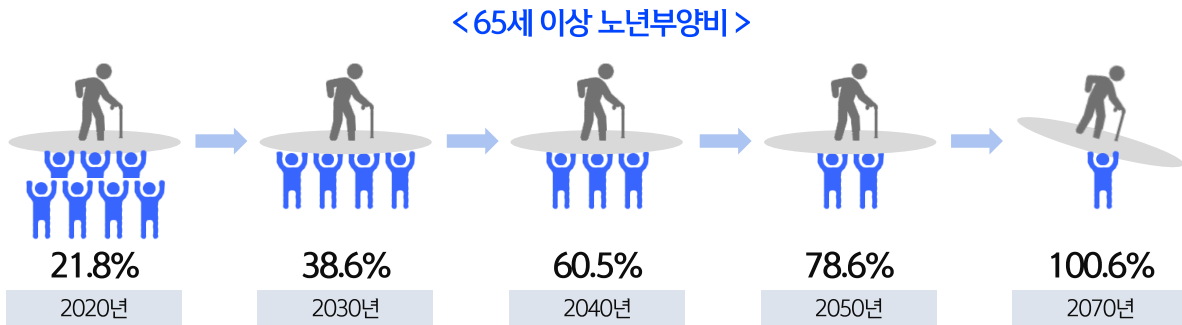
1 근로환경의 변화

조기 퇴직과 잦은 이직이 일반화되어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줄고, 일하는 기간보다 노후 기간이 더 길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 저출산, 고령화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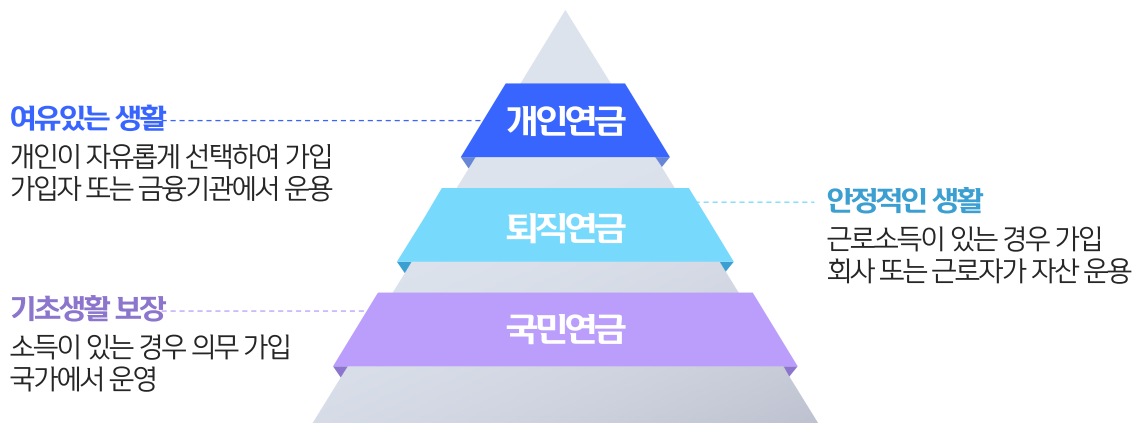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더불어 인구 고령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년부양비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노후생활 재원을 직접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 노년부양비란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율을 말함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 중위추계

3 3층 보장체계의 필요성

퇴직연금제도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3층 보장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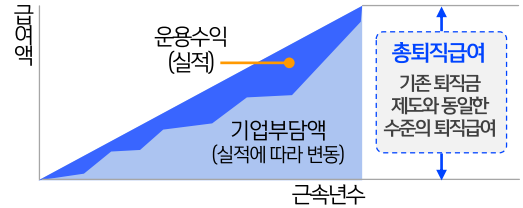


0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특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할 때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아 노후생활에 쓸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 DB),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 DC)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IRP)로 구성됩니다.

확정급여형(DB)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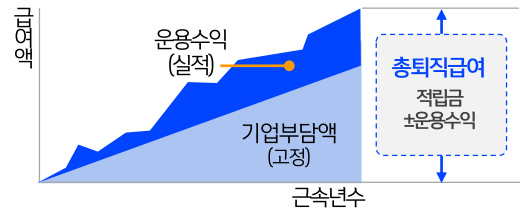
퇴직급여가 퇴직시점의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 자산은 사용자(기업)가 운용하며 근로자는 퇴직금제도와 동일한 퇴직금을 수령함.



확정기여형(DC) 제도

퇴직급여가 근로자별 퇴직연금의 운용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퇴직연금제도. 기업은 매년 근로자를 위한 부담금을 납부하며 퇴직연금 자산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함.

※ 사용자(기업)의 부담금 : 매년 연간 임금총액 X 1/12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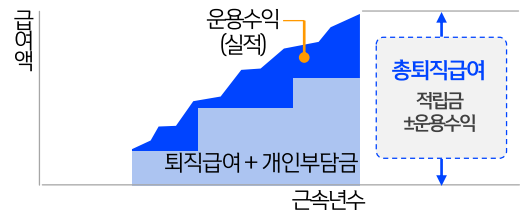


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한 퇴직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적립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

※ 기업형IRP : 10인 미만 기업이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급여제도 도입으로 인정

※ 개인형퇴직연금(IRP)제도 가입자격 : 퇴직급여 수령자,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근로자, 자영업자, 직역연금 가입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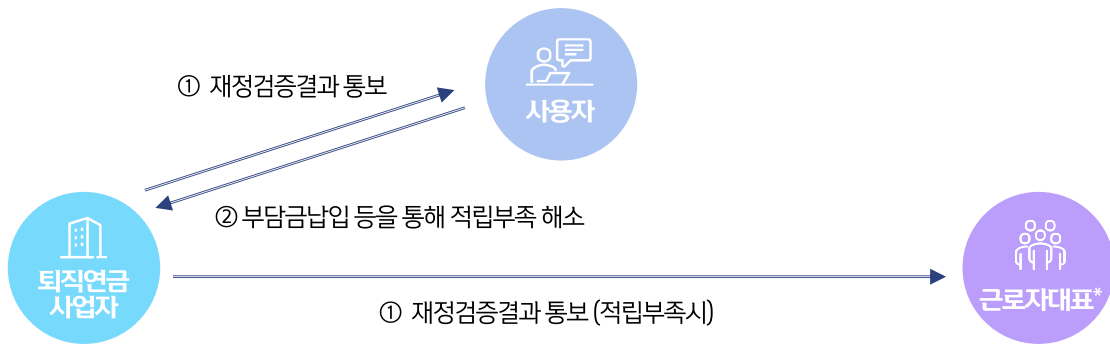
퇴직연금제도 종류별 세부 특징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기업형IRP	개인형IRP
급여종류	개인형 IRP로 급여이전(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수급요건	퇴직시		연금 : 55세 이상 및 연금 수령기간 5년 이상 일시금 : 제한없음	
급여액	직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 (퇴직금제도와 동일)	매년 임금총액 x 1/12 ± 운용수익	납입원금(퇴직금 또는 개인부담금) ± 운용수익	
적립금운용주체	기업	가입자	가입자	
개인 추가납입	불가	가능 (연간 1,800만원 이내)	가능 (연간 1,800만원 이내)	
중도인출	불가	가능	가능	

- 개인 추가 납입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 ※ 세액공제율 : 16.5%, 단, 종합소득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 초과 시 13.2%
- 확정기여형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적립된 자산은 근로자(가입자)의 지시대로 운용되며 퇴직(해지)시 수령하는 급여는 운용성과에 따라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확정기여형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은 법령상의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

03 사용자의 적립금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사용자의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적립금이 법정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이하 “재정검증”)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재정검증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에 미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대표*에게 재정검증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재정검증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적립금부족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 (법정) 최소적립비율

구분	~ 2013.12.31	~ 2015.12.31	~ 2018.12.31	~ 2021.12.31	2022년 이후
최소적립비율	60%	70%	80%	9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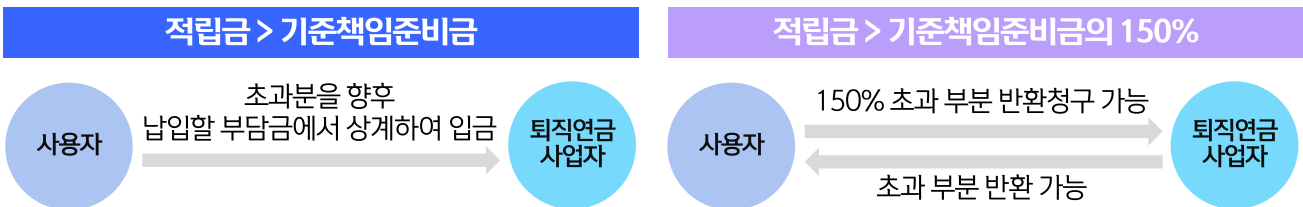
단,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최소적립비율은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을 따른다.

○ 적립금부족 해소 방안

부담금 납입 등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 등을 통해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1/3 이상을 해소 ▷ 해소시기 :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
-----------------	--

* 근로자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경우



※ 기준책임준비금 : 사용자가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적립금 운용현황

적립금 운용현황은 개별교육자료 또는 신한투자증권 사이버창구(기업전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4 임금 및 퇴직급여

확정급여형의 퇴직급여

기존 퇴직금제도의 퇴직급여 산정방식과 동일합니다.

30일분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참고: 평균임금 계산

$$\text{평균임금} = \frac{\text{퇴직 이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text{위 3개월 간의 총 일수}}$$

○ 연금 수령 시 예상 수령액(세전)

수령기간 \ 일시금	5천만원	1억원
10년 수령	월 493천원	월 986천원
15년 수령	월 356천원	월 712천원
20년 수령	월 289천원	월 577천원

주1) 연금계산이자율 연 3.5% 가정

임금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 고정적인 상여금 등

⊖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 출근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식대/교통비 등

※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정해져 있는지,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는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 및 지급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68시간 근로에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 근로기준법 :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 + 1주일 12시간 초과 근로 금지(휴일 근로 포함)

- 큰 규모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도입 (1.5년 간격)

사업장 규모	시행일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등	2018년 7월 1일
50인 ~ 299인	2020년 1월 1일
5인 ~ 49인	2021년 7월 1일

※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특례제의 업종(금융보험업, 통신업, 여객자동차운송업, 사회복지사업 등)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

05 퇴직급여 지급 및 개인형IRP로의 이전절차

퇴직연금/퇴직금제도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시 개인형 IRP로의 이전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주1)} 이전된 퇴직급여는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1) 퇴직금제도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시 개인형IRP로 이전 의무화('22.4.14시행)



○ 참조: 개인형IRP로의 의무이전 제외사유

-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가입자가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단,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 한도 내)
- 퇴직급여액이 법령에서 정한 금액(3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퇴직시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급여종류	퇴직연금제도	수급요건
연금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기업형IRP ^{주1)}	• 개인형 IRP로 이전하여 연금수령 가능
	개인형IRP	•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 5년 이상 (단, 퇴직금 수령 시 가입기간 요건 불요) • 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
일시금	모든 제도	• 연금수급 요건이 안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

주1)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기업형 IRP의 경우, 퇴직시 개인형IRP로 의무이전 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연금의 지급은 개인형IRP에서 이루어 짐

05 퇴직급여 지급 및 개인형IRP로의 이전절차

개인형IRP로의 이전시 효과

 <p>과세이연 효과</p> <p>개인형IRP로 납입한 적립금은 해지 또는 연금수령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됨</p>	 <p>연금수령 가능</p> <p>연금수령요건 충족시, 연금으로 수령하여 저율의 연금소득세로 과세 가능</p>	 <p>세액공제 효과</p> <p>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900만원까지 개인추가부담금 납입분에 대해 세액공제</p>
---	---	--

개인형IRP로의 이전 후 적립금 운용방법 및 상품

개인형 IRP에 납입된 퇴직금 및 개인추가납입금으로 정기예금, 수익증권(펀드)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운용상품 및 투자비율은 가입자가 직접 결정하며 그 운용결과는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운용상품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는 개인형IRP를 가입한 금융기관의 상담 등을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이체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공제나 과세이연 등의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이체는 이체 받을 금융회사(신규 가입 회사)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기존 연금계좌로 이체하고자 할 경우 신규계좌개설이 생략되므로 이체 하는 금융회사에서도 신청 가능)

- 연금계좌이체의 종류 : IRP ↔ IRP간 이체, 연금저축계좌 ↔ IRP간 이체,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간 이체
- 참조 : 연금저축계좌 ↔ IRP간 이전제도 ('16.7.1 시행)



06 중도인출 / 담보대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나,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 한도 내에서 수급권의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확정급여형(DB) 가입자는 중도인출 불가)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가능 법정 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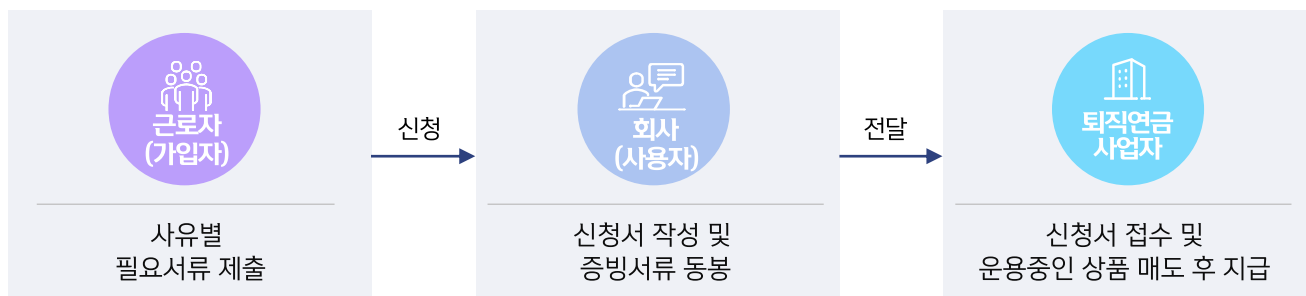
구분	사유	중도인출	담보대출*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단,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
3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¹⁾ 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 ²⁾ 를 부담하는 경우 (단, DC중도인출의 경우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	○	○
4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
5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
6	가입자가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¹⁾ 의 대학 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X	○
7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X	○
8	재난 ³⁾ 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
9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함)	○	X

주1)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
 주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주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담보대출 (미시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담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상 수급액 변경에 따른 관련법(임금채권법 등)과의 상충으로 실질적인 담보 인정이 어려워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음

참고 : 중도인출 프로세스



07 연금소득세 및 퇴직소득세 과세 체계

급여를 연금으로 받을 경우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며,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인출순서	연금으로 받을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① 공제받지 않은 개인부담금 ^{주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제외
② 퇴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70%^{주2)})를 나누어 과세 ※ 무조건 분리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소득세 100% 과세 ※ 분류과세
③ 공제 받은 개인부담금 및 계좌 내 운용수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소득세 (연령에 따라 5.5~3.3%^{주3)}) 원천징수 → 연간 1,5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함^{주4)} ※ 조건부 분리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적인 경우 기타소득세(16.5%) 과세 ※ 무조건 분리과세 부득이한 경우^{주5)} 연금소득세(연령에 따라 5.5~3.3%^{주3)})과세 ※ 무조건 분리과세

주1) 소득·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 원금은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시 과세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에 「연금 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제출 필요)

주2) 실제 연금수령 11년 차 부터는 퇴직소득세의 60% 적용

주3) 연령에 따른 연금소득세 차등 과세 : 69세 이하 5.5%, 79세 이하 4.4%, 80세 이상 3.3%

주4) 연간 사적 연금소득금액(퇴직금 등 제외)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에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16.5%, 지방소득세포함) 중 선택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5) 부득이한 경우 : 사망, 해외이주, 개인파산/회생, 천재지변,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본인 및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금액 한도 있음)

07 연금소득세 및 퇴직소득세 과세 체계

퇴직소득세 과세체계

- 퇴직소득세는 다른 소득(근로,연금,사업 등의 종합소득)과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 퇴직소득세는 **실제근속연수**와 **퇴직급여의 수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세율은 낮아 지고, 퇴직금이 커질수록 세율은 높아집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계산사례 (25년 근속, 퇴직금 2억원)]

① 퇴직급여액	200,000,000원
② 퇴직소득금액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200,000,000원
③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공제)	55,000,000원 = 4,000만원 + 300만원 × (25년-20년)
④ 환산급여계산 (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69,600,000원 = (2억원-55,000,000원) × 12 ÷ 25년
⑤ 퇴직소득공제 (환산급여공제)	44,960,000원 = 8백만원+(69,600,000원-8백만원)×60%
⑥ 퇴직소득과세표준	24,640,000원 = 69,600천원-44,960천원
⑦ 환산산출세액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2,436,000원 = (24,640,000원 × 15% - 1,260,000원)
⑧ 퇴직소득산출세액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5,075,000원 = 2,436,000원 ÷ 12 × 25년 ※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 별도

※ 2023년 현행 세법에 따라 계산된 자료입니다.

※ 중간정산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였으며, 상기 세금은 지방소득세를 미포함한 금액입니다.
(과거에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이를 합산하여 다시 계산할 수 있는 '퇴직소득 세액정산제도'가 있습니다.)

07 연금소득세 및 퇴직소득세 과세 체계

퇴직소득세 과세 체계

※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퇴직소득공제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1천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4천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퇴직소득공제 (환산급여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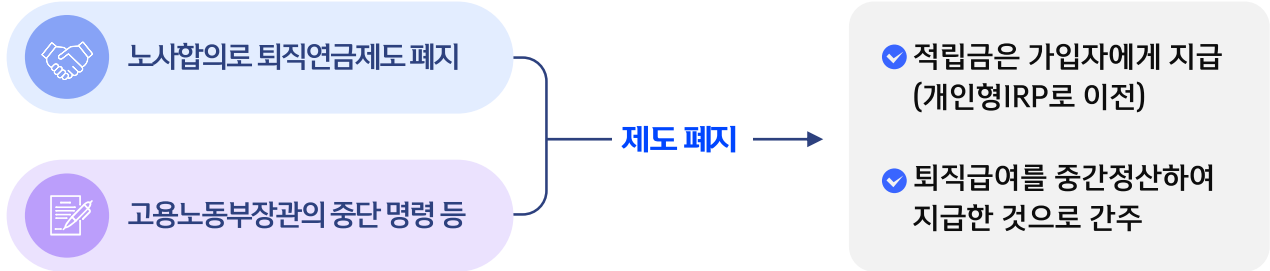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8백만원 이하	전액공제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8백만원 + 8백만원 초과분 × 60%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천520만원 + 7천만원 초과분 ×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천170만원 + 1억원 초과분 × 45%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 + 3억원 초과분 × 35%

※ 기본 세율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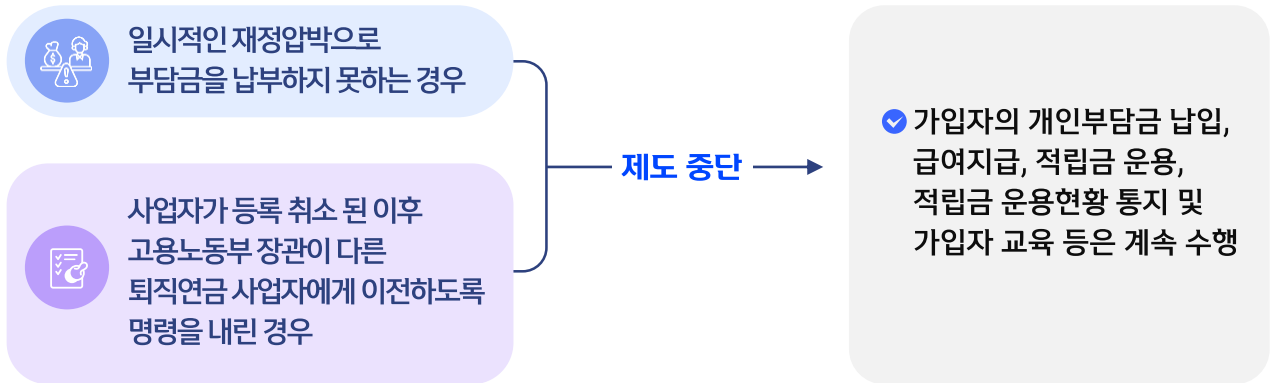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0,000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0,000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440,000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0,000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0,000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0,000원
10억원 초과	45%	65,940,000원

08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시 처리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가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기간에 대한 처리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

09 폐업·도산기업의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 신청 방법

폐업·도산기업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 시행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의 폐업·도산기업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 시행에 따라 사용자를 통한 퇴직급여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가입자가 직접 퇴직연금 가입 금융기관에 퇴직연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폐업·도산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자께서는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신한투자증권 영업점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청구 퇴직연금 지급신청 안내

신청 대상	폐업·도산기업 기업의 신한투자증권 퇴직연금 가입자 (단, 퇴직연금 규약의 수급자격에 따라 퇴직금 지급가능여부가 결정 됨)
신청 방법	근로자 본인이 직접 영업점에 방문하여 지급신청 (개인형IRP 계좌가 없는 경우, 개인형IRP 신규 가입 후 지급신청)
필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분증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급여 신청 근로자(가입자)의 사회보험제도 자격상실 확인서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급여 신청 근로자(가입자)의 다른 회사에 취업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고용보험 자격취득사실 확인, 재직증명서 등)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당금을 수령하신 경우 당사 퇴직연금 수령시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수령내역을 통지하셔야 합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표자 또는 임원의 경우 압류/상계 대상 채권 여부에 따라 수령금액에 상이할 수 있습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장에서 퇴직금 전액을 정상 수령한 경우, 당사 퇴직연금 수령에 대해 사업주가 부당이득반환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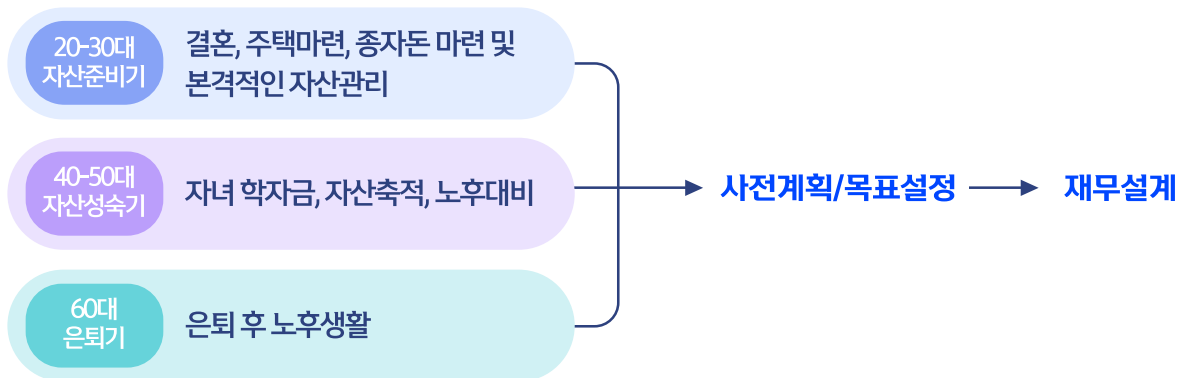


퇴직연금 가입여부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퇴직연금 가입여부는 당사 퇴직연금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1588-1122)

10 자산·부채관리 및 노후설계

자산·부채관리

인생의 각 단계별 상황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재무 사건들을 미리 예상하고 계획하고 조절하는 자산, 부채관리가 필요합니다.



평균적 생애설계시 고려사항

우리사회는 고령화, 고물가, 저금리 시대에 직면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시 까지 5~10년의 소득공백 발생 → 자녀교육비, 결혼자금, 부모부양비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

목표자금을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노후설계 필요 (은퇴시 필요자금과 준비자금의 은퇴시점 가치가 일치하도록 투자)

노후 필요자금 산출

01. 기본 정보 정리	배우자, 자녀 현황 / 각각의 목표정리 / 자산현황 등
02. 필요 자금 분석	각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필요 자금 분석
03. 준비 자금 분석	목표 실현을 위해 현재 준비된 자금파악 및 확보 계획
04. 부족 / 잉여 자금 분석	차이 분석(준비자금-필요자금)
05. 평가 / 대안 마련	부족분에 대한 대책 마련

10 자산·부채관리 및 노후설계

01 기본 정보 정리

노후 필요자금 산출을 위하여 현재의 가족현황과 재무상태 그리고 향후 계획을 미리 상세히 파악하여 봅니다.

가족현황	연령	월수입
남편	38세	300만원
아내	34세	260만원
자녀(남)	7세	-

○ 재무상태

자산	금액(만원)	부채	금액(만원)
현금자산	1,300	주택담보대출	3,000
은퇴자산(국민연금,개인연금)	1,600	자동차 할부금	1,900
부동산 및 자동차	28,000	부채총액	4,900
자산총액	30,900	순자산(자산총액-부채총액)	26,000

○ 향후계획

항목	시점
주택확장	7년 후
자녀교육비(대학교)	12년 후
노후자금	22년 후

02 필요자금 분석

설정해 놓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가 필요한지를 산정해 봅니다. 구체적인 목표별로 필요예상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며, 필요예상금액의 현재가치도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현재가치 이자율: 연 3.5%)

향후계획	시점	필요예상금액	필요예상금액(현재가치)
주택확장	7년 후	12,700만원	1억
자녀교육비(대학교)	12년 후	7,500만원	5,000만원
노후자금	22년 후	127,800만원	6억

03 준비자금 분석

현재 보유 중인 자산 중 특정한 재무목표를 위해 미리 용도를 정해 놓은 자금을 먼저 할당한 뒤,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자산을 배분합니다. 노후설계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자금을 꼬리표를 달 듯 목표를 정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항목	금액	적립계획
대출상환	3,000만원	월 60만원씩 4년간 대출상환 (대출이율 : 연 3.5%)
주택확장	12,700만원	월 110만원씩 7년간 적립식펀드(목표수익률 : 연 9.0%)
자녀교육비	7,500만원	월 40만원씩 12년간 정기적금(목표수익률 연 4.3%)
노후자금	127,800만원	월 32만원씩 22년간 연금보험료 납입(목표수익률 : 연 3.5%)

10 자산·부채관리 및 노후설계

04 부족/잉여자금 분석

계산된 준비자금에서 필요자금을 빼 봅니다. 전체의 과부족도 중요하지만 각 재무 목표별로 과부족을 계산해보고 필요하다면 목표별 자금의 재배분도 수행합니다.

05 평가/대안 마련

부족/잉여 자금 분석 후 자신의 노후 필요자금 준비현황에 대하여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목표자금의 규모나 목표 수익률 수준을 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합니다.

11 기타

계약이전 처리 절차

01. 퇴직연금 규약변경→..... 02. 관할 노동청에 신고→..... 03. 신규 퇴직연금 계약 체결
04. 계약이전 신청→..... 05. 적립금 이전→..... 06. 적립금 운용

개인형IRP의 개인 추가납입 한도

개인형IRP의 개인 추가납입한도	세액공제 한도
연간 1,800만원 + ISA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주1)}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의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총 1억원 한도) ^{주2)}	연금저축 및 DC 개인 추가 납입금액과 합산하여 연간 900만원 + ISA 전환금액 ^{주1)} 의 10% (300만원 한도)

주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금액을 만기일로부터 60일내 IRP계좌로 전환 입금 시, 전환금액의10% (최대 300만원 한도)에 대해서 추가 세액공제 가능

주2) 국내에 소유한 주택(이하 "연금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이를 대체하여 다른 주택(이하 "축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지 않은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가 연금주택 양도가액에서 축소주택 취득가액을 뺀 주택차액을 연금주택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

주3) 세액공제를 : 16.5%, 단, 종합소득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 초과 시 13.2%



신한투자증권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연금계좌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 등 거래 시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자료로 퇴직연금 가입 선택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